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102586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의 소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7. 12. 7.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136,020,990원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축·수산물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2011. 4. 19. [redacted]시 소재 [redacted]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redacted]단지 부지에 농산물 가공 공장을 설립하고 총 1,500억 원을 투자하며, 피고는 원고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경 [redacted]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자 명의 변경 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고, 2013. 6. 4.경 피고로부터 시유재산인 [redacted]단지 편입 토지를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0. 주식회사 [redacted]씨와 공장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5. 7. 8.경 위 단지 내에 면적 15,035.65㎡의 공장을 완공(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14.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부칙 제25조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공장 신축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았다.

마. 피고는 2016. 8.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사업시행자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아닌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및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취득세 경감률 100분의 60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취득세 100분의 40이 과다 경감되었다'는 이유로 과다 경감된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 예고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취득에 따른 면제된 취득세 128,668,51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7,352,480원(가산세 포함) 합계 136,020,9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16. [redacted]도에 지방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redacted]도는 2017. 2. 1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주장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직접 입주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제78조 제3항 또는 제4항 중 어느 규정을 선택하더라도 취득세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는 산업단지에 관한 취득세 혜택을 면제에서 감경으로 축소하면서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던 제4항을 입주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 기존의 감면 폭과 적용대상을 축소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는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신뢰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 또는 사업시행자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즉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의 경과규정은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은 물론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1. 4. 19. [redacted]단지의 사업시행자였던 피고와 사이에 강경농공단지 투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미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으므로, 원고는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 및 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에 반하는 피고의 취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redacted]단지의 사업시행자였던 피고는 입주기업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입주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2011. 4. 19. 원고와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가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매입과 지장물 철거 등 핵심 업무를 완료하였으나, 잔여 기반시설 공사를 직접 실시할 경우 비용 증가로 원고가 입주를 꺼려할 것을 우려하여 원고로 하여금 직접 기반시설 공사를 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원고에게 사업시행자 승계를 요청하였다. 즉 원고는 실질적으로 [redacted]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입주기업이고, 원고가 [redacted]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된 것은 피고의 행정지도 및 취득세 면제에 대한 약속에 따른 것이었으며, 원고는 피고가 부여한 신뢰에 따라 [redacted]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되고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였으나 큰 손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을 당시 어떠한 이유를 달지 않고 이를 수리함으로써 원고에게 또 다시 공적인 신뢰를 부여하였으므로, 종전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적용 여부

가)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율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서 "제7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제4항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위 부칙 조항의 문언상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위 부칙 조항은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일시에 축소할 경우 입주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어 개정법 시행 전 및 그 이후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 기업들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종전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 규정된 점(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법 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에서 감경으로 그 감면폭만을 축소하였을 뿐, 본문에 명시된 적용대상에 관하여는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특히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의 적용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한 이후에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를 개시하여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후인 2015. 7. 8.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장을 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득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 대하여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및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 및 증인 A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A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2011. 4. 19.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논산시 경제지원과 공무원이 원고에게 산업단지 입주 후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하여 어떠한 약속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사업시행자가 원고로 변경되는 무렵에 있어서는 피고가 취득세와 관련한 어떠한 약속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취득세 등 세금에 관하여 특별히 문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와 피고가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70호로 개정되어 2011. 3. 29.부터 시행) 제78조 제3항 및 제4항은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이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가 이후 법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개정으로 면제 기간이 1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장된 것이므로(그 당시에는 법 규정상 취득세가 면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측 공무원의 취득세 면제에 관한 발언은 모두 당시 법 규정에 대한 설명일 뿐 새삼스러운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로서는 향후 법률의 개정으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원고 스스로도 취득세 면제 특례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바, 위 취득세 면제 조항이 한시적 조항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약 2억 원 상당의 연간 물류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장을 논산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은 단지 136,020,990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목적만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경제적 손익을 포함하여 향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제반 조건을 두루 참작한 경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더라면 입주기업으로서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의 적용 대상이 되어 취득세를 면제받았을 것인데 원고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원고의 의도와 무관하게 취득세를 면제받지 못하게 된 사정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취득세와 관련한 어떠한 약속을 받았다는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사업시행자 지위 승계와 취득세 면제 여부는 무관한 점, ⑥ 설령 피고의 제안으로 사업시행자 명의를 변경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성 평가를 거친 원고의 독자적인 경영 판단이라 할 것이고, 게다가 원고가 실제로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기반시설 공사 등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였고 향후 산업단지 부지 중 원고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다른 기업에 분양할 예정이어서(이 부분의 손익은 온전히 원고에게 귀속된다) 실질적으로 입주기업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신축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인한 취득세 면제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취득세 등 감면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신청을 수리하는 사실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을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박지은

판사 손호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4.1.1>

1.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14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4.12.31>

1.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5

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부칙 <제12955호,2014.12.31>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제4항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끝.